



대한장애인체육회
장애인체육회

장애인체육회
장애인체육회

사회적응 센터
소통의 원천
소통하자구요





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가림막 철거 관련 예산 집행 내역

	내용	금액	지출 항목
1	가림막 철거	4,950,000 원	문화체육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
2	가림막 랩핑	4,512,200 원	문화체육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
3	가림막 철거 대기 인력비	4,829,000 원	문화체육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

행정안전부 사무관리비 범위 예시 내용

- 사무관리비

-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: 필기구, 용지대, 토너등
-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, 급량비
- 일반수수료: 세탁, 사진현상, 법령가제료 등
- 신문,잡지,관보,법령추록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
- 당직용 침구구입비(사업소음,면,동)
- 일숙직비(사업소,음,면,동)
-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
- 행정사무장비 임차료
-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

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가림막 철거 관련 예산 집행 내역

	내용	금액	지출 항목
1	가림막 철거	4,950,000 원	문화체육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
2	가림막 랩핑	4,512,200 원	문화체육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
3	가림막 철거 대기 인력비	4,829,000 원	문화체육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
4	가림막 정비 안전관리 용역	9,812,000 원	문화체육과 영등포아트스퀘어 운영 사무관리비

영등포아트스퀘어 운영 (계속)

(문화체육과)

□ 사업목적

- '모두가 소통하고 향유하는 문화플랫폼'으로 구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영등포구 대표 공공문화복합공간의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일상 속 문화 경험을 증진시키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- 시 설 명: 영등포아트스퀘어(Art Square)
- 위 치: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지하2층
- 운영시간: 월 - 일(10:00 ~ 19:00), 설·추석 명절 휴무
- 공간구성

구분	문화예술 공간	편의 공간
공간면적	960㎡	227㎡
주요시설	아카이브(영등포 역사/홍보) 라운지(관광정보/전시), 문화활동 공간	스마트 사물함 대기 공간
운영주체	영등포구 직영	

○ 사업내용

- 구 홍보관 운영, 문화예술프로젝트(전시, 공연, 북 토크 등)
- 문화도시 연계사업, 외부자원 유치 등

□ 추진계획

사업명	내용
시설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운영계획 수립,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, 기타 행정업무 등 · 대관 업무(미디어월, 전시공간 등), 외부자원 발굴 · 지역사회 문화예술그룹 네트워킹 · 영등포 관광정보센터 협력 운영(운영인력 순환 근무)
구정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LED패널 등을 통해 지역(영등포구)의 정보와 소식을 전하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(주요 관광지, 문화프로그램 정보, 구민대상 정책 정보 등) 및 업로드
문화예술 프로젝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문화도시 사업 연계 운영 · 영등포예술인총연합회 등 지역문화예술단체 대상 공간지원 사업 · 사진 공모를 통한 지역예술단체와의 협업으로 시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시 및 공연(거리공연 등), 방학 체험프로그램 · 기 문화사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: 봄꽃축제, 젊음의거리 음악회 등 · '문화가 있는 날' 등 자체 문화예술프로그램(전시, 공연 등) 기획 및 운영 · 외부자원 연계: 공공기관 미술품 대여사업, 기타 협력사업 진행 ※ 사업 진행 시 사회적 약자 계층 우선 지원
구민의견수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간 방문 구민 대상 이용 만족도 상시 조사 · 공간 활용 관련 구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

사무관리비

34,700

26,070

8,630

- 사무용 비품 구입
200천원*10월=2,000천원
- 사무기기(복합기, 정수기, 공기청정기 등) 임차
250천원*12월=3,000천원
- 청사관리용품(청소, 방역물품 등)
800천원*4회=3,200천원
- 도서인쇄비(대봉투, 명함 등 각종 서식)
125천원*4식=500천원
- 공간운영위원회 수당
100천원*5명*3회=1,500천원
- 자문회의 수당
100천원*10명=1,000천원
- 기제근로자 채용 심사위원수당
100천원*5명*1회=500천원
- 통합홍보물 제작비
1,750천원*4분기=7,000천원
- SNS 채널 운영비
5,000천원*1식=5,000천원
- 간행물(신문 등) 구독비
100천원*10종=1,000천원
- 콘텐츠 제작 설치비
10,000천원*1식=10,000천원

지방재정법

- 제47조.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.
- 47조의 2[예산의 이용, 이체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.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.